

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안)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5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 4. 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0. 4. 9

다. 상정일자 :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0. 4. 15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종 엽 치수방재과장

가. 제안이유

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안)에 대하여, 『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』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의회 상정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.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

- 풍수해 특성상 단위사업만으로 재해피해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음.
-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, 재해발생 시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.
-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, 관리뿐만 아니라, 재해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2).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

- 풍수해 특성, 피해발생원인, 재해위험도, 풍수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,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.

3).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추진 개요

○ 관련 규정

- 『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』 규정에 따라 태풍·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및 예상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.

○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
- 사업위치 : 마포구 행정구역 전체(23.88km²)
- 사업범위
 - 기초 현황조사
 - 취약성 조사 및 위험도 분석
 -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
 - 투자우선순위 결정
- 용역기간 : 2009. 2. 09 ~ 2010. 04. 30
- 용역사 : (주)청석엔지니어링
- 도급액 : 119,452천원

3. 검토보고 (신승관 전문위원)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태풍·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및 예상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중·장기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-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
풍수해 위험요인 분석을 위해 하천, 내수, 토사, 사면, 바람 등에 대한 재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

- 이에 따른 풍수해 저감대책으로는
하천재해는 재해요인 없으므로 하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, 내수재해는 2020년도까지 배수분구 정비사업을 마치며, 빗물펌프장은 30년 빈도 폭우를 대비하여 증설을 하고, 사면·토사 재해는 노고산과 매봉산, 와우산에 대한 사면보강 및 녹화를 하며, 기타 상암 지하차도는 강우시 순찰 및 수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며, 도로변 불량한 빗물받이는 개선하고, 가을철 낙엽에 의한 우수 빗물받이는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.

- 본 계획안 수립의 기대효과는
 -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의한 통수능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
 - 빗물펌프장 단계별 증설에 의한 수방능력 향상
 -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에 의한 저지대 침수 예방
 - 재난 예·경보 시스템 구축에 의한 재난 대응 예방 활용 효과
 -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예방 등의 효과

- 본 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마포구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09. 2. 9 ~

2010. 4. 30까지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, 2009. 12. 16. 우리구청 수방 상황실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, 2010. 3. 31.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.

- 본 계획안이 수립·시행되면 우리구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에 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완벽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시행으로 우리구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